

#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2020. 11. 23. 규정 제828호

## 1. 개정이유

- 학칙 개정(제822호, 2020. 5. 1.)에 따른 행정조직의 명칭을 반영하고 부서별 분장 업무를 현행화하고자 함.
- 현재 진행 중인 학칙 개정안 팀제와 관련하여 팀장 보직의 기준과 부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학 행정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신설, 분장업무 명시 (안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부칙**)

현행		→	개편	
행정조직	교학처		행정조직	교무처
행정조직	훈련처	행정조직	훈련학생처	
부속시설	종합인력개발원	부속시설	인재개발원	
부속연구소	체육과학연구소	연구협력 시설	- 산학협력본부	
기타조직	- 산학협력단 - 대외협력단		- 체육과학연구소	
기타조직	산학협력단	기타조직	- 스포츠정보원 산학협력단(법인)	

※ 학내 규정 개정사항을 부칙에 열거

- 팀장은 총괄팀장을 고려하여 5급, 6급으로 하고, 5급, 6급이 모두 팀장을 보할 경우 7급으로 보하도록 개정 및 자구 수정(안 제3조의2)
- 부서별 팀장명을 명시(안 제7조, 별표)

대학원, 처·국, 부속시설, 연구협력시설	부서명	팀 장 명
대학원		대학원팀장
교무처	교무과	교무팀장, 수업·학적팀장
기획처	-	기획평가총괄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훈련학생처	-	훈련학생총괄팀장 훈련팀장, 입시·학생팀장

대학원, 처·국, 부속시설, 연구협력시설	부서명	팀 장 명
사무국	총무과	총무팀장, 재무팀장
	-	<b>시설총괄팀장</b> 건축팀장, 기계팀장, 전기팀장
학술정보원	-	정보관리팀장 정보봉사팀장 정보시스템관리1팀장, 정보시스템관리2팀장, 정보시스템관리3팀장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팀장
생활관	-	생활팀장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팀장
보건진료소	-	물리치료팀장
산학협력본부	-	대외협력팀장, 산학지원팀장

### 3. 주요 토의과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참고)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붙 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3조제2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총괄팀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팀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로 보한다. 다만, 팀장의 경우 해당 직급에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무처) ① 교무과장은 교무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교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 인사관리
2. 교원 정원관리
3. 교원 복무관리
4. 교원 교육 및 연수
5. 교원 상훈 및 징계
6. 교원 제증명 발급
7. 학칙의 제정·개정 및 변경
8. 연구실 배정 및 관리
9. 교원 업적평가(교원성과급 포함)
10. 교무과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
11. 그 밖의 교무행정에 필요한 사항

③ 수업·학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
2. 교과과정 편성, 개편 및 조정
3.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4. 교수 책임시간 조정
5. 수업시간표 작성
6.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E-러닝 포함)
7. 실험·실습 기자재 업무
8. 교외 교육 지도
9. 보강계획 승인 및 관리
10. 교원의 강의평가
11. 학점교류
12. 집중수업 관리
13. 학점 및 성적관리

14. 학적 통계
15. 각종 시험 관리
16. 타 전공 신청 및 승인
17. 학적변동관리(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
18. 학사징계
19.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
20. 학위수여
21. 교직과정운영
22. 교원자격증 발급
23. 학적부 관리
24. 학적(력) 조회
25. 강사채용 및 관리
26. 강사 및 학생 제증명 발급
27. 강의실 배정 및 관리
28. 관인관리(제증명발급용)
29. 그 밖의 학사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획처) ① 기획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2.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주·월간업무포함)
3. 대학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4. 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6. 대학요람 발간에 관한 사항
7. 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8. 정부재정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평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구조개혁, 대학외부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학과평가, 행정부서 평가, 부속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 인증제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교육통계 및 통계연보 발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기획평가총괄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기획처장을 보좌한다.

제7조의 제목 “(훈련처)” 를 “(훈련학생처)”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련처 훈련과장” 을 “훈련팀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11호) 중 “훈련과 소속” 을 “소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그 밖의 체육특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입시·학생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입시에 관한 업무
2. 학생 정원 관리
3. 장학생 선발
4. 수업료 감면자 선발
5. 학생 학자금 용자에 관한 사항
6. 학생병사 업무
7. 학생활동 상담지도 및 지원
8. 학생회 운영 지도
9. 학생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학생 해외 유학 추천
11. 학생증 발급
12. 학생 행사 및 집회에 관한 사항
13.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4. 학생 후생 복지시설 관리
15. 후생복지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보 발행 및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각종 간행물에 대한 지도감독
18. 그 밖의 입시 및 학생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훈련학생총괄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훈련학생처장을 보좌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무국) ① 총무과장은 총무과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관리
2. 보안 업무
3. 직원 정원·인사 및 교육훈련
4. 직원 성과평가, 상벌, 복무관리
5. 문서의 접수·배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6. 규정 정비 및 관리
7. 감사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9.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연금, 4대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2. 각종 행사(교무, 학생행사 제외)
13. 청사관리 및 조경 관리
14. 시설 사용 승인(대회의실, 대강당)
15. 공용차량 및 주차 관리에 관한 사항

16. 사회복지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
1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타과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재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계직 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5. 등록금 징수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④ 건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종합계획 수립
2. 시설사업 심사분석
3. 공사계획,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공사 준공 검사
5. 시설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건축협의
7. 관급자재관리 및 수불부 정리
8. 공사대장 정리
9. 하자보수대장 정리
10. 설계도면 관리
11. 영선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⑤ 기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 및 위생난방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2. 보일러가스, 위험물취급자 선·해임사항
3.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 훈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⑥ 전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항
2. 전기, 통신시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시설총괄팀장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의 제목 “(종합인력개발원)” 을 “(인재개발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인력개발원장” 을 “인재개발원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취업·창업” 을 “재학생 취업·창업·진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업·창업” 을 “재학생 취업·창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을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산학협력본부) 산학협력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 및 조정
2. 산학연협력 협약 체결 및 이행
3.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학술연구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심사분석
5.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창업·취업 지원
6.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구년제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대외협력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학 홍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 명칭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숙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산학연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스포츠정보원) 스포츠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체육, 스포츠 변화 양상 분석 및 결과 보고
2. 국가, 지역사회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
3. 정부부처 사업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설계 및 재원 마련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2. 산학협력단 회계에 관한 사항
3. 교외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연구비(간접비 포함) 관리
4.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
6. 가족회사 및 학교기업 관련 업무
7.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채용·평가·복무 등) 업무
8. 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포함) 보수 지급 및 4대 보험관리
9. 그 밖에 산학협력단 업무에 관한 사항

## 부 칙(제828호, 2020.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한국체육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한국체육대학교 교육과정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④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⑤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⑥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⑦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⑧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무처장”으로 한다.

⑨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⑩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⑪ 한국체육대학교 조교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훈련처장”을 각각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⑫ 한국체육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⑬ 한국체육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학과”를 “교무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중 “교학처장”을 각각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85조 중 “교학과”를 “교무과”로 한다.

제86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⑭ 한국체육대학교 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⑮ 한국체육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⑯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속연구소의 장”을 “연구협력시설의 장”으로 한다.
- 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학과(교무팀)”를 “교무과(교무팀)”로, “교학과(입시학생팀)”를 “훈련학생총괄팀 (입시학생팀)”로 한다.
- ⑱ 한국체육대학교 자체 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종합인력 개발센터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산학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한다.
- ⑲ 한국체육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⑳ 한국체육대학교 시설공간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훈련처”를 “훈련학생처”로,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 ㉑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 수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대외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한다.
- ㉒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㉓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훈련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㉔ 한국체육대학교 훈련장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㉕ 한국체육대학교 장학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학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훈련처장”은 “학과장”으로 “훈련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중 “훈련처장”은 “학과장”으로 “훈련처장”을 “스포츠과학대학장”으로 한다.
- ㉞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학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학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학생과”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학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31조 중 “교학처”는 “훈련학생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㉟ 한국체육대학교 공무국의출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은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 ㊱ 한국체육대학교 시설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훈련처”를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훈련처”를 “훈련학생처”로 한다.
- ㊲ 한국체육대학교 캠퍼스 주차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시설과장”을 “시설총괄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㊳ 한국체육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부속 연구소의 장”을 “연구협력시설의 장”으로 한다.
- ㊴ 한국체육대학교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학과장”을 “교무과장”으로, “기획과장”을 “기획평가총괄팀장”으로, “훈련과장”을 “훈련학생총괄팀장”으로, “시설과장”을 “시설총괄팀장”으로 한다.
- ㊵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정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㊶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하고,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대의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별표 2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㉔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㉕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인력개발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하고,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㉖ 한국체육대학교 보건진료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㉗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산학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학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㉘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산학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교학처장, 대학원장”을 “대학원장, 교무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㉙ 한국체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㉚ 한국체육대학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의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제4조 중 “대의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㉛ 한국체육대학교 외국인숙소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대의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의협력단”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훈련처”를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훈련처”를 “훈련학생처”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의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대의협력단운영위원회”를 “산학협력본부운영위원회”로 한다.

- ④②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④③ 한국체육대학교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과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 한다.  
제16조1항 중 “교학과장”을 “교무과장”으로, “기획과장”을 “기획평가총괄팀장”으로, “훈련과장”을 “훈련학생총괄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학처장”을 “교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교학처”을 “교무처”로 한다.
- ④④ 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속연구소”를 “연구협력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 ④⑤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를 “제18조의2”로, “부속연구소”를 “연구협력시설”로 한다.
- ④⑥ 한국체육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서별 팀제 운영  
(제3조의2제1항 관련)

대학원, 처·국, 부속시설, 연구협력시설	부서명	팀 장 명
대학원	-	대학원팀장
교무처	교무과	교무팀장, 수업·학적팀장
기획처	-	기획평가총괄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훈련학생처	-	훈련학생총괄팀장 훈련팀장, 입시·학생팀장
사무국	총무과	총무팀장, 재무팀장
	-	시설총괄팀장 건축팀장, 기계팀장, 전기팀장
학술정보원	-	정보관리팀장 정보봉사팀장 정보시스템관리1팀장, 정보시스템관리2팀장, 정보시스템관리3팀장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팀장
생활관	-	생활팀장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팀장
보건진료소	-	물리치료팀장
산학협력본부	-	대외협력팀장, 산학지원팀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팀제 운영) <u>처·국 등의 장은</u>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팀장은 6급 공무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u>다만 6급 공무원이 없을 경우</u> 7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3조의2(팀제 운영) ①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3조제2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p> <p>② 총괄팀장은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팀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로 보한다. 다만, 팀장의 경우 해당 직급에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제5조(교학처) 교학처 교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li> <li>2. 각종 시험 관리</li> <li>3. 교과과정 편성, 개편 및 조정</li> <li>4. 교원 인사관리</li> <li>5. 교원 및 학생 정원관리</li> <li>6. 관인관리(제증명발급용)</li> <li>7. 교원 복무관리</li> <li>8. 교원 교육 및 연수</li> <li>9. 교원 상훈 및 징계</li> <li>10. 교원 및 학생 제증명 발급</li> <li>11. 교원의 강의평가</li> <li>12. 학칙의 제정·개정 및 변경</li> <li>13. 시간강사 위촉</li> <li>14. 입학·휴학·복학·편입·제적·졸업 · 전과·등록</li> <li>15. 학적(력) 조회</li> <li>16. 학적부 관리</li> <li>17. 학위수여</li> <li>18. 수강신청</li> <li>19. 수업시간표 작성</li> <li>20. 실험·실습 및 수업관리</li> <li>21. 강의실 및 연구실 배정</li> <li>22. 교원자격증 발급</li> <li>23. 교원 업적평가(교원성과급 포함)</li> <li>24.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li> </ol>	<p>제5조(교무처) 교무과장은 교무과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교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원 인사관리</li> <li>2. 교원 정원관리</li> <li>3. 교원 복무관리</li> <li>4. 교원 교육 및 연수</li> <li>5. 교원 상훈 및 징계</li> <li>6. 교원 제증명 발급</li> <li>7. 학칙의 제정·개정 및 변경</li> <li>8. 연구실 배정 및 관리</li> <li>9. 교원 업적평가(교원성과급 포함)</li> <li>10. 교무과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li> <li>11. 그 밖의 교무행정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수업·학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li> <li>2. 교과과정 편성, 개편 및 조정</li> <li>3.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li> <li>4. 교수 책임시간 조정</li> <li>5. 수업시간표 작성</li> <li>6. 수강신청 및 수업관리(E-러닝 포함)</li> <li>7. 실험·실습 기자재 업무</li> <li>8. 교외 교육 지도</li> <li>9. 보강계획 승인 및 관리</li> <li>10. 교원의 강의평가</li> <li>11. 학점교류</li> </ol>

현 행	개 정 안
<p>25. <u>학적 통계</u></p> <p>26. <u>수업교재관리(전문실기교원 교재 제외)</u></p> <p>27. <u>교외 교육 지도</u></p> <p>28. <u>학점 및 성적관리</u></p> <p>29. <u>교수 책임시간 조정</u></p> <p>30. <u>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u></p> <p>31. <u>학사 징계</u></p> <p>32. <u>교학과 소속 각종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면</u></p> <p>33. <u>학생병사 업무</u></p> <p>34. <u>학생활동 상담지도 및 지원</u></p> <p>35. <u>학생회 운영 지도</u></p> <p>36. <u>학생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u></p> <p>37. <u>학생 해외 유학 추천</u></p> <p>38. <u>장학생 선발</u></p> <p>39. <u>각종 간행물에 대한 지도감독</u></p> <p>40. <u>학생 동원에 관한 사항</u></p> <p>41. <u>학생증 발급</u></p> <p>42. <u>학생 행사 및 집회에 관한 사항</u></p> <p>43. <u>수업료 감면자 선발</u></p> <p>44. <u>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u></p> <p>45. <u>학생 후생 복지시설 관리</u></p> <p>46. <u>후생복지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u></p> <p>47. <u>학생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u></p> <p>48. <u>총동문회 사무에 관한 사항</u></p> <p>49. <u>삭 제</u></p> <p>50. <u>학보 발행 및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u></p> <p>51. <u>그 밖의 교무행정에 필요한 사항</u></p>	<p>12. <u>집중수업 관리</u></p> <p>13. <u>학점 및 성적관리</u></p> <p>14. <u>학적 통계</u></p> <p>15. <u>각종 시험 관리</u></p> <p>16. <u>타 전공 신청 및 승인</u></p> <p>17. <u>학적변동관리(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등록)</u></p> <p>18. <u>학사징계</u></p> <p>19. <u>학위취득에 관한 업무</u></p> <p>20. <u>학위수여</u></p> <p>21. <u>교직과정운영</u></p> <p>22. <u>교원자격증 발급</u></p> <p>23. <u>학적부 관리</u></p> <p>24. <u>학적(력) 조회</u></p> <p>25. <u>강사채용 및 관리</u></p> <p>26. <u>강사 및 학생 제증명 발급</u></p> <p>27. <u>강의실 배정 및 관리</u></p> <p>28. <u>관인관리(제증명발급용)</u></p> <p>29. <u>그 밖의 학사행정에 필요한 사항</u></p>
<p><b>제6조(기획처) 기획처 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b></p> <p>1. <u>대학발전에 관한 종합계획</u></p> <p>2. <u>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주·월간업무포함)</u></p> <p>3. <u>대학구조개혁, 대학평가 및 대학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u></p> <p>4. <u>자체평가(학과평가, 행정부서평가, 부속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u></p> <p>5. <u>평가 인증제에 관한 사항</u></p> <p>6. <u>정부재정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u></p> <p>7. <u>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u></p>	<p><b>제6조(기획처) ① 기획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b></p> <p>1. <u>대학발전에 관한 종합계획</u></p> <p>2. <u>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주·월간업무포함)</u></p> <p>3. <u>대학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u></p> <p>4. <u>공간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5. <u>대학정보공시에 관한 사항</u></p> <p>6. <u>대학요람 발간에 관한 사항</u></p> <p>7. <u>대학발전기금에 관한 사항</u></p> <p>8. <u>정부재정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u></p> <p>9. <u>그 밖의 대학 발전에 관한 사항</u></p> <p>② <b>평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b></p>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사무국) ① 사무국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 관리</li> <li>2. 보안 업무</li> <li>3. 직원 정원·인사 및 교육훈련</li> <li>4. 직원 성과평가, 상벌, 복무관리</li> <li>5. 문서의 접수·배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li> <li>6. 규정 정비 및 관리</li> <li>7. 감사에 관한 사항</li> <li>8.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i> <li>9.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li> <li>10.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li> <li>11. 공무원연금, 4대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li> <li>12. 각종 행사(교무, 학생행사 제외)</li> <li>13. 청사관리 및 조경 관리</li> <li>14. 시설 사용 승인(대회의실, 대강당)</li> <li>15. 공용차량 및 주차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6.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li> <li>19.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20.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li> <li>21. 회계직 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li> <li>22. 교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li> <li>23. 등록금 징수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li> <li>2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li> <li>25. 그 밖의 타과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li> </ol> <p><b>② 사무국 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종합계획 수립</li> <li>2. 시설사업 심사분석</li> <li>3. 공사계획,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li> <li>4. 공사 준공 검사</li> <li>5. 시설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li> <li>6.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건축협의</li> <li>7. 관급자재관리 및 수불부 정리</li> <li>8. 공사대장 정리</li> <li>9. 하자보수대장 정리</li> <li>10. 설계도면 관리</li> </ol>	<p><b>제8조(사무국) ① 총무과장은 총무과 업무를 총괄한다.</b></p> <p><b>② 총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 관리</li> <li>2. 보안 업무</li> <li>3. 직원 정원·인사 및 교육훈련</li> <li>4. 직원 성과평가, 상벌, 복무관리</li> <li>5. 문서의 접수·배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li> <li>6. 규정 정비 및 관리</li> <li>7. 감사에 관한 사항</li> <li>8.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li> <li>9.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li> <li>10.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li> <li>11. 공무원연금, 4대보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li> <li>12. 각종 행사(교무, 학생행사 제외)</li> <li>13. 청사관리 및 조경 관리</li> <li>14. 시설 사용 승인(대회의실, 대강당)</li> <li>15. 공용차량 및 주차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6.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li> <li>19. 그 밖의 타과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li> </ol> <p><b>③ 재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2.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li> <li>3. 회계직 공무원 임면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li> <li>4. 교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li> <li>5. 등록금 징수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항</li> <li>6.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li> </ol> <p><b>④ 건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종합계획 수립</li> <li>2. 시설사업 심사분석</li> <li>3. 공사계획,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li> <li>4. 공사 준공 검사</li> <li>5. 시설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li> <li>6.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및 건축협의</li> <li>7. 관급자재관리 및 수불부 정리</li> <li>8. 공사대장 정리</li> </ol>

현행	개정안
<p>11. 영선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p> <p>12. 기계 및 위생난방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p> <p>13. 보일러가스, 위험물취급자 선·해임사항</p> <p>14.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15.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p> <p>16. 소방 훈련 및 계획에 관한 사항</p> <p>17.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항</p> <p>18. 전기, 통신시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p>19.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p>	<p>9. 하자보수대장 정리</p> <p>10. 설계도면 관리</p> <p>11. 영선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p> <p>⑤ 기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기계 및 위생난방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p> <p>2. 보일러가스, 위험물취급자 선·해임사항</p> <p>3.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4.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p> <p>5. 소방 훈련 및 계획에 관한 사항</p> <p>⑥ 전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사항</p> <p>2. 전기, 통신시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p> <p>3.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p> <p>⑦ 시설총괄팀장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한다.</p>
<p><b>제12조(종합인력개발원) 종합인력개발원장</b>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취업·창업</u>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 <p>2. (생략)</p> <p>3. <u>취업·창업</u> 추천, 상담 및 정보 제공</p> <p>4. ~ 12. (생략)</p> <p>13. <u>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u>에 관한 사항</p> <p>14. (생략)</p>	<p><b>제12조(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b>----- -----.</p> <p>1. <u>재학생 취업·창업·진로</u> -----</p> <p>2. (현행과 같음)</p> <p>3. <u>재학생 취업·창업</u> -----</p> <p>4. ~ 12. (현행과 같음)</p> <p>13. <u>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u>-----</p> <p>14. (현행과 같음)</p>
<p><b>제16조</b> (생략)</p>	<p><b>제17조</b> (현행 제16조와 같음)</p>
<p><b>제17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b>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b>제19조(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b>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p> <p>2. 산학협력단 회계에 관한 사항</p> <p>3. <u>교외연구(용역)과제계약및 연계(간접비 포함) 관리</u></p> <p>4.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p> <p>5. 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p> <p>6. 가족회사 및 학교기업 관련 업무</p> <p>7.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채용·평가·복무 등) 업무</p> <p>8. 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포함) 보수 지급 및 4대 보험관리</p> <p>9. 그 밖에 산학협력단 업무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8조(스포츠정보원)</u> 스포츠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내·외 체육, 스포츠 변화 양상 분석 및 결과 보고</u></li> <li>2. <u>국가, 지역사회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u></li> <li>3. <u>정부부처 사업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설계 및 재원 마련</u></li> </ol>
<p><u>제18조(대의협력단)</u> 대외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학의 홍보에 관한 사항</u></li> <li>2. <u>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산학연협력 제외)</u></li> <li>3. <u>대의협력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u></li> <li>4. <u>외국인숙소 운영관리</u></li> <li>5. <u>그 밖의 대학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u></li> </ol>	<p><u>제16조(산학협력본부)</u> 산학협력본부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산학연협력 총괄 기획 및 조정</u></li> <li>2. <u>산학연협력 계약 체결 및 이행</u></li> <li>3. <u>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4. <u>대학학술연구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심사분석</u></li> <li>5. <u>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창업·취업 지원</u></li> <li>6. <u>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u></li> <li>7. <u>연구년제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u></li> <li>8. <u>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li> <li>9. <u>대의협력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10. <u>대학 홍보에 관한 사항</u></li> <li>11. <u>대학 명칭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u></li> <li>12. <u>외국인숙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u></li> <li>13. <u>그 밖의 산학연협력 등에 관한 사항</u></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제828호, 2020. x. x.)</b></p> <p><u>제1조(시행일)</u>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u> ①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 생 략 ) ...</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서별 팀제 운영</u> (제3조의2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대학원, 처·국, 부속시설, 연구협력시설</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서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팀 장 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학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학원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교무처</td> <td style="text-align: center;">교무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교무팀장, 수업·학적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획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획평가총괄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훈련학생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훈련학생총괄팀장 훈련팀장, 입시·학생팀장</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사무국</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무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무팀장, 재무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총괄팀장 건축팀장, 기계팀장, 전기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술정보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정보관리팀장 정보봉사팀장 정보시스템관리1팀장, 정보시스템관리2팀장 정보시스템관리3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생교육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생교육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활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재개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재개발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건진료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물리치료팀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학협력본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의협력팀장, 산학지원팀장</td> </tr> </tbody> </table>	대학원, 처·국, 부속시설, 연구협력시설	부서명	팀 장 명	대학원	-	대학원팀장	교무처	교무과	교무팀장, 수업·학적팀장	기획처	-	기획평가총괄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훈련학생처	-	훈련학생총괄팀장 훈련팀장, 입시·학생팀장	사무국	총무과	총무팀장, 재무팀장	-	시설총괄팀장 건축팀장, 기계팀장, 전기팀장	학술정보원	-	정보관리팀장 정보봉사팀장 정보시스템관리1팀장, 정보시스템관리2팀장 정보시스템관리3팀장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팀장	생활관	-	생활팀장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팀장	보건진료소	-	물리치료팀장	산학협력본부	-	대의협력팀장, 산학지원팀장
대학원, 처·국, 부속시설, 연구협력시설	부서명	팀 장 명																																					
대학원	-	대학원팀장																																					
교무처	교무과	교무팀장, 수업·학적팀장																																					
기획처	-	기획평가총괄팀장 기획팀장, 평가팀장																																					
훈련학생처	-	훈련학생총괄팀장 훈련팀장, 입시·학생팀장																																					
사무국	총무과	총무팀장, 재무팀장																																					
	-	시설총괄팀장 건축팀장, 기계팀장, 전기팀장																																					
학술정보원	-	정보관리팀장 정보봉사팀장 정보시스템관리1팀장, 정보시스템관리2팀장 정보시스템관리3팀장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팀장																																					
생활관	-	생활팀장																																					
인재개발원	-	인재개발팀장																																					
보건진료소	-	물리치료팀장																																					
산학협력본부	-	대의협력팀장, 산학지원팀장																																					